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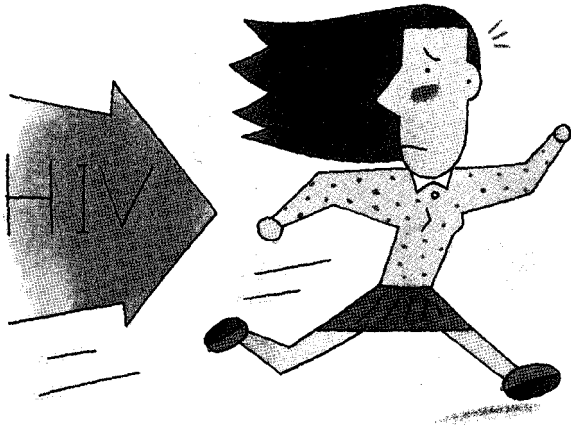
**금년** 2월 8일에 그간 실시되어 오던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의 개정이 공포되어 이로부터 3개월 후인 1999년 5월 8일부터 실시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는 전염병예방법과는 별도로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이

1987년 11월 28일, 법률 제 3943호로 제정되어 실시되어 오고 있다. 이 법을 제정할 당시에는 국내에서 후천성면역결핍증의 감염자가 10여명정도에 지나지 않았으나 국내외적으로 환자와 감염자의 급격한 증가가 있어 일반국민과 마스크에서 이에 대한 관심과 공포가 지극히 높아, 특단의 조치를 요구하고 있었다. 따라서 보건사회부(당시) 관계자들이 헌신적인 노력과 개척자적인 정신으로 각종 자료를 확보하여 하나의 모범이 될 수 있는 법을 제정하여 실시해 오고 있다.

## 후천성 면역결핍증 예방법 개정에 관한 견해

신영오 / 강원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을 제정할 당시에는 일반인이 후천성면역결핍증을 호기심의 대상으로 보도한 경우가 많았으나 이제는 보다 객관적으로 다루기 시작하였다. 일반국민에 대한 교육과 홍보는 보다 과학적이며 근본적인 사실에 기초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그간 법의 시행과정에서 미비한 경우가 발견되는 경우가 있어 개정의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후천성면역결핍증이란 새로운 전염병은 1981년에 처음으로 발생하여 현재에 이르는 동안 큰 변화가 있었다. 국내외적으로 환자수에서 급격한 증가하였으며 후천성면역결핍증 및 사람면역결핍증 바이러스(Human Immunodeficiency Virus, HIV)에 관하여 새로운 과학적 사실들이 규명되어 왔다.

이 법을 처음으로 제정할 당시에는 일반언론이 후천성면역결핍증을 호기심의 대상으로 보도한 경우가 많았으나 이제는 보다 객관적으로 다루기 시작하였다. 일반국민에 대한 교육과 홍보는 보다 과학적이며 근본적인 사실에 기초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그간 법의 시행과정에서 미비한 경우가 발견되는 경우가 있어 개정의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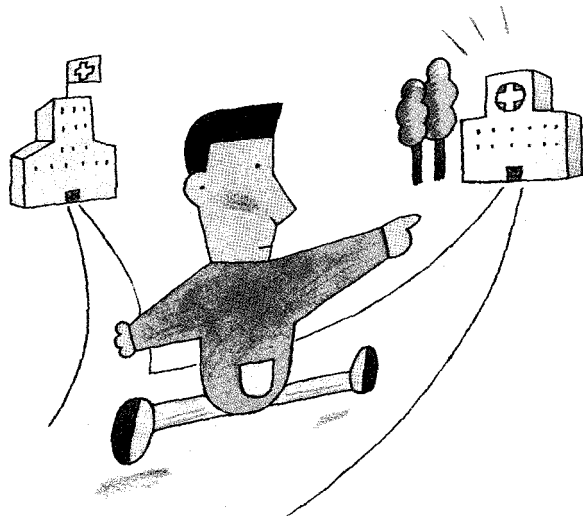
본문에서는 동법의 개정에 관한 주요내용과 그 배경을 소개하고 이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 첫째,

그간 후천성면역결핍증환자의 치료를 담당하는 의료기관을 시도별로 지정하여 치료하게 됨에 따라 환자가 이들 지정의료기관과 거리가 떨어진 경우, 치료를 받기에 불편한 점이 많았다. 또한 후천성면역결핍증치료병원으로 지정 받은 의료기관은 환자가 감소될 우려가 있는 반면, 이들 기관은 지정 받지 않은 의료기관에 비하여 보다 권위 있는 의료기관으로 공인 받는 듯한 인상을 준 것도 사실이었다. 따라서 이번 개정에서는 이러한 지정의료기관제도에 관한 조항을 폐지함으로써 환자가 보다 쉽게 원하는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차별의 소지를 제거하였다고 볼 수 있다.

## 둘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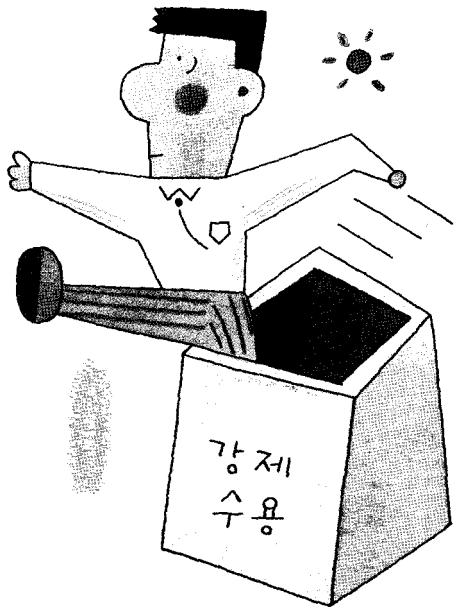
개정 이전의 동법에서는 후천성면역결핍증환자 혹은 감염자가 타인에게 HIV를 감염시킬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될 때에는 강제적으로 격리 수용할 수 있는 조항이 있었다. 이 조항의 취지와는 별개로 실제적으로 HIV를 감염시킬 수 있는 우려를 주는 행위의 기준을 판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혈액을 통하여 타인을 감염시키는 행위는 그 판단의 기준이 상대적



으로 명확한 경우가 많으나 성생활과 관련하여서는 그 판단과 증명이 어렵게 된다. 실제적으로 이러한 조항을 위반하여 강제 격리 수용한 사례가 국내에서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법의 실효성이 없었던 반면에 강제수용에 관한 조항이 있음으로 인하여 후천성면역결핍증자 혹은 감염자들에게 인권침해를 줄 수 있다는 우려를 낳게 하였다. 따라서 이번의 개정에서 강제격리수용에 관한 조항과 이와 관련된 제반 조항을 삭제하였다. 이에 대신하여 환자나 감염자가 원하는 경우에 이들이 자원하여 이용할 수 있는 요양시설 및 쉼터를 정부가 직접 운영하거나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요양시설 및 쉼터의 운영으로 환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감해 준은 물론이고 동료집단(peer group)을 형성하여 상호 고충을 털어놓으며 상부상조하므로써 보

그간 후천성면역결핍증환자의 치료를 담당하는 의료기관을 시도별로 지정하여 치료하게 됨에 따라 환자가 이들 지정의료기관과 거리가 떨어진 경우, 치료를 받기에 불편한 점이 많았다. 또한 후천성면역결핍증치료병원으로 지정 받은 의료기관은 환자가 감소될 우려가 있는 반면, 이들 기관은 지정 받지 않은 의료기관에 비하여 보다 권위 있는 의료기관으로 공인 받는 듯한 인상을 준 것도 사실이었다.



개정 이전의 동법에는 법의 실효성이 없었던 반면에 강제수용에 관한 조항이 있음으로 인하여 후천성면역결핍증자 혹은 감염자들에게 인권침해를 줄 수 있다는 우려를 낳게 하였다. 따라서 이번의 개정에서 강제격리 수용에 관한 조항과 이와 관련된 제반 조항을 삭제하였다. 이에 대신하여 환자나 감염자가 원하는 경우에 이들이 자원하여 이용할 수 있는 요양시설 및 실험실을 정부가 직접 운영하거나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다 많은 실제적인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그간 지방정부조직 이 변화함에 따라 이에 수반되는 관련 자구를 수정하였다. 이러한 개정은 내용의 변화는 없으나 자구의 수정을 통하여 법체계를 보완한 것이다.

이번의 동법개정은 후천성면역 결핍증에 관한 상기한 여건의 변화에 따라 취한 당연하고 적절한 조치로 받아지고 있다. 또한 이번의 법개정을 계기로 하여 적당한 기회가 있을 때에 동법전반에 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를 위하여 관련 전문가 뿐만이 아니라 환자, 관련공무원등 다양한 분야에서 참가하여 의견을 취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검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몇가지 예를 들면 우선 동법의 명칭에 관한 사

항이다. 동법의 명칭은 후천성면역 결핍증 예방법으로 되어있으나 실제적으로 동법은 환자에 관한 조항 보다 많은 수의 조항이 HIV의 예방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알려진 마와 같이 후천성면역 결핍증은 HIV감염자중의 일부 특이한 집단을 뜻하고 있다. 동법은 환자를 예방하는 것 보다 이 질병의 병원체인 HIV를 예방하는 것이 근본적인 취지임을 생각할 때 명칭에 관하여 재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두 번째는 동법에서 후천성면역 결핍증의 정의에 관한 사항이다.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정의는 수차례 걸쳐서 수정을 거듭하여 오고 있다. 현재 미국에서는 실제 후천성면역결핍증환자를 정의할 때에 25개의 구체적인 임상증상을 보이는 감염자와 아울러 면역이 일정수준 떨어진 감염자도 포함하고 있다. 환자에 관한 정의가 애매할 때 행정적으로 혼선이 올 수 있다. 즉 후천성면역결핍증환자를 보고하고 집계함에 있어 그 정의를 불 모범이나 시행령에 포함시켜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 나라는 이제까지 많은 외국과는 다르게 HIV의 전파와 후천성면역결핍환자발생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그러나 앞으로도 보다 효과적으로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서는 보다 좋은 법을 만들고 지키는 노력이 꾸준히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A**